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3. 제 안 이 유

가. 향후 지역개발 수요와 갑작스런 재해 등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

나.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 도모

4. 주 요 골 자

가.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적립조성(안 제2조)

나. 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도 사용(안 제3안)

다. 기금의 안정적 관리·운용을 위해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고, 도 금고 은행에 예치관리(안 제4조)

라. 기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하기 위하여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, 기능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(안 제 5조)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(안)을 검토한바

- 지역개발 수요와 긴급 재해발생등으로 인한 지방채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, 순세계잉여금중 20%를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확보하여, 체계적인 재정운영에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으나
 - 현재까지 회계별 지방채 채무현황 및 채무상환 현황
 - 기금적립 비율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20% 범위내로 정한 배경
 -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이유
 - 예치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한정 한 사유등에 대하여
 -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※ 붙임 :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검토내용

- 본 조례(안)은 2000. 5. 10 행정자치부의 “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강구지침(조례 준칙안)”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- 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에 의하면
⇒ 지침은 조례제정 의무사항이 아님.
- ※ • 조례제정 대상 : 헌법과 법률외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
• 해당부서 실무자는 조례제정 여·부가 행자부의 평가(10월)대상 이라 함

□ 지방채상환감채기금조례 우선 제정대상 자치단체(행자부 지침)

- 채무상환비율이 10%이상 단체 ⇒ 우리 도 3.44%
- 당해연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%이상 단체 ⇒ 우리 도 11.3%
- 향후 채무상환원리금이 일정년도에 집중되어 당해연도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
- 대규모 계속사업 추진으로 수개년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원확보에 부담이되는 단체
- 차임금이 단기 고리에 치중되어 원리금부담이 과중하거나, 재정여력에 비해 부채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

□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

- 채무상환비율 10%이상 - 20%미만 단체 :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
- 채무상환비율 20% 이상 - 30%미만 단체 : 순세계잉여금의 30%이상
- 채무상환비율 30%이상 단체 : 순세계잉여금의 50%이상